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가단52431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승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개명전:C)

3. D

변 론 종 결 2022. 2. 16.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188,365원과 그 중 82,615,645원에는 대하여 2020. 7. 24.부터, 6,572,720원에 대하여는 2020. 7. 29.부터 각 2021. 1. 2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9.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6,57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6,57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원리금 합계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이 있었던 2019. 10. 11. 이전인 2016. 11. 11. 피고 회사 및 피고 B와 1차 대출 관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가 2020. 3. 24.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1차 대출 관련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E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함에 따라 채권자는 위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2020. 7. 29.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면,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 여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 B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F조합직원 G에게 대출에 관한 상담한 결과, 대출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G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갈테니 그 전세금으로 매매대금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점, 피고 D와 G는 2019.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피고 D의 처 계좌로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 D는 위 3억 1,000만 원과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더해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의 악의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별지